

# 강사인사규정

□ 제정 : 2019. 7. 12.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 제 2 장 임 용

**제3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

**제4조(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며,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강사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7조(임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4-1-24 강사인사규정

2. 학과(부)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제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9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4.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

**제10조(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제 3 장 재임용

**제11조(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별지 서식 제2호) 및 관련한 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9조 제1호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③ 재임용평가는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한다.

④ 강의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임용된 학기가 3개 학기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별지 서식 제3호)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⑥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⑦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별지 서식 제4호)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15일 이상의 기일 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14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과가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 4 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15조(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 4-1-24 강사인사규정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준수
2. 제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 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

③ 강사는 학칙 제49조의 3에 의한 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소속)**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로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처우)** ① 임금은 임금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 강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1조(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 5 장 징 계

**제22조(징계의 사유)** 본 대학이 유지·경영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5조(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제척사유)**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8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29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징계의결)**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징계의결의 기한)**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1-24 강사인사규정

[별지 서식 제2호]

## 강사 재임용 신청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작성>

0000학년도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3호]

##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과	성명	생년월일	심사결과
			□적합(70점 이상) / □부적합(70점 미만)

심사 항목	배점	점수 기준	심사점수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 미준수시: 강좌당 -2점	10	0점 ~ 10점	
- 성적입력 및 성적정정 기간 준수 ※ 미준수시: 강좌당 -2점	10	0점 ~ 10점	
- 출결관리 준수 ※ 출결 미준수시: 강좌당 -2점	10	0점 ~ 10점	
- 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준수 ※ 미준수시: 강좌당 -2점	10	0점 ~ 10점	
- 강의평가 90점 이상	50	0점 ~ 50점	
- 강의평가 80점 ~ 89점	40		
- 강의평가 70점 ~ 79점	30		
- 강의평가 60점 ~ 69점	20		
- 강의평가 50점 ~ 59점	10		
- 강의평가 49점 이하	0		
-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10	0점 ~ 10점	
<b>합계</b>	100점		
- 평가미달자 학과(부) 발전기여도 가점	10	0점 ~ 10점	
<b>심사결과 총점</b>			

- 1)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 2) 강의평가점수는 직전 3개 학기 평균점수로 평가한다.  
(단, 평가기간 중 신규임용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전 1개 학기 점수로 평가)
- 3)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이상의 합의로 위원장이 작성한다.
- 4) 재임용 기준 미달 자에 대하여 건학이념 및 대학발전 학과(부)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경우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

<b>평가점수 7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가점 최대 10점)</b> (건학이념 구현, 대학발전 또는 학과(부)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기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원장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4호]

##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

소 속:

사 번:

성 명:

생년월일: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위 강사는 강사인사규정 제14조(재임용 거부)에 따라 재임용이 거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